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0363
----------	-------

제안연월일 : 2017. 11.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6월 3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16.11.17.)에, 2017년 2월 24일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7.8.28.)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박완주의원안 등 5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346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6.11.18.)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2.)에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2.)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함.

의 안 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소위원회부	소위심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2016.06.03.	2016.11.17.	2016.11.18. 2017.02.22.
	정 부	2016.06.30.	2016.11.17.	2017.02.22.
	박홍근의원	2016.08.12.	2016.11.17.	2016.11.18. 2017.02.22.
	양승조의원	2016.08.24.	2016.11.17.	2016.11.18. 2017.02.22.
	유은혜의원	2016.09.20.	2016.11.17.	2016.11.18. 2017.02.22.
	심재권의원	2016.11.04.	2016.11.17.	2016.11.18. 2017.02.22.
	진선미의원	2017.02.24.	2017.08.28.	-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7.9.18.)에서 박완주의원안 등 6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부관장 등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함.

라. 제35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7.9.25.)에서 공청회를 마친 6건의 개정안과 진선미의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마. 제354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7.9.2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에 장제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제5호 신설).

- 라.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제목).
- 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5호 신설).
- 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 사.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5조 신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신청인”을 “즉시 신청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제비 지원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별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결정 및 등록) ①·② (생 략)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u>신청인</u>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 4. (생 략)	<u>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즉시 신청인-----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u><신 설></u>	5. 장제비 지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 제5호----- -----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u><신 설></u>	<u>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11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생략)</u> <u>제11조의3(법률상담 등) (생략)</u> <u><신 설></u>	<u>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u> <u>제11조의4(법률상담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u> <u>제15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